

현대 초연결사회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양 천 수**

< 목 차 >

- I. 서론
- II. 현대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 III. 인격권의 발전과 법적 보호
- IV.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모색
- V. 글을 맺으며

I. 서론

이 글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초연결사회를 분석하고 이러한 초연결사회가 현행 법체계, 그 중에서도 인격권 보호체계에 어떤 도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거의 모든 사회적 영역이 네트워크화 되는 초연결사회는 그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를 야기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정보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개념이 최근 사회 전 영역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초연결사회는 이러한 ‘빅데이터’(big data)와 결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공리를 증진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동시에 현행 법체계, 그 중에서도 인격권 보호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초연결사회화’를 통해 사회 전체가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우리의 개인정보가 완벽하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

*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연구저서 「빅데이터와 인권: 빅데이터와 인권의 실제적 조화를 위한 법정정책 방안」(영남대학교출판부, 2016)의 내용 일부를 대폭 축약 및 보완·발전시킨 것이다.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법학박사

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필두로 하는 인격권이 형해화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인격권, 특히 ‘정보적 인격권’이라 칭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한편으로는 초연결사회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초연결사회에서 각 개인의 정보와 인격에 대한 권리가 형해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를 시론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II. 현대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1. 현대사회의 다양한 특징

복잡하고 다양하며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때문에 현대사회를 지칭하는 용어나 개념 역시 다양하다. 이를테면 지난 1986년에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 Beck)에 의해 제시된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는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개념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¹⁾ 이는 최근에는 ‘안전사회’(Sicherheitsgesellschaft)로 발전하고 있다.²⁾ 또한 ‘정보화사회’나 ‘지식기반사회’도 현대사회의 특징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회 전체의 정보량은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³⁾ 이로 인해 최근에는 ‘빅데이터’(big data)라는 개념이 새롭게 사회 전 영역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빅데이터는 오늘날 사회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각종 데이터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 U. Beck, *Risikogesellschaft*, Frankfurt/M, 1986.

2) 이에 관해서는 양천수, “현대 안전사회와 법적 통제: 형사법을 예로 하여”, 『안암법학』 제 49호, 안암법학회, 2016.1, 81-127면 참고.

3) 이를 보여주는 빅토르 마이어 원베르거·케네스 쿠키어, 이지연 (옮김),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21세기북스, 2013, 21면 참고.

2. 초연결사회

1) 의의

이렇게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거의 모든 사회적 영역이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최근 새로운 개념이 현대사회의 특징을 규정하는 용어로 등장하고 있다.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바로 그것이다.⁴⁾ 초연결사회는 현대사회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구조변동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영역들이 인터넷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초연결사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초연결사회란 전체 사회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영역들이 인터넷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연결되는 사회를 뜻한다.

현대사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결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초연결사회로 나아간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연결의 확장이다. 이러한 연결의 확장은 이미 오랜 전부터 진행되었다. 우리 인간은 언어와 문자를 개발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전화, 핸드폰, PC통신, 인터넷 등과 같은 현대적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등장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더욱더 확장되고 공고화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람과 사물이 서로 연결되는 단계이다. 각종 무선통신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사람과 사물 사이의 연결로 확장된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람과 사물 사이의 연결을 넘어, 이제는 사물과 사물 사이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인 ‘상호주체적 연결’, 사람과 사물 사이의 연결인 ‘주체-객체적 연결’을 넘어 사물과 사물 사이의 연결인 ‘상호객체적 연결’까지 연결이 확장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초연결사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초연결사회에 관해서는 우선 유영성 외, 「초연결 사회의 도래와 우리의 미래」, 한울, 2014; 금융찬, “디지털문명기 초연결사회, 창조경제논의”, 「컴퓨터월드」 제363호, 파워미디어, 2014.1, 124-131면; 선원진·김두현, “초연결사회로의 변화와 개인정보 보호”, 「정보와 통신」 제31권 제4호, 한국통신학회, 2014.4, 53-58면 등 참고.

2) 초연결사회의 순기능

초연결사회라는 새로운 현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함, 즉 사회적 공리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매개되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행위환경을 비약적으로 확장하고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TV에서 광고하는 것처럼 스마트폰만으로 간단하게 모든 결제를 처리할 수 있고, 집 밖에서도 집 안에 있는 모든 것, 가령 조명이나 온도, 음악, TV 등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도 초연결사회가 제공하는 사회적 공리라고 말할 수 있다.

3) 초연결사회의 역기능

그러나 초연결사회가 우리에게 사회적 공리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초연결사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험도 야기한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초연결사회가 가속화되면, 한편으로 우리에게 관한 ‘모든 정보’가 초연결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회적 영역으로 노출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가속화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초연결사회는 우리에게 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집적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는 거의 매일 ‘구글’과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SNS는 우리에게 관한 정보를 거의 무한대로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른바 ‘빅데이터’가 출현하게 된다. 초연결사회와 마찬가지로 한편으로 빅데이터는 우리에게 사회적 공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빅데이터는 우리의 인격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이를테면 빅데이터 과학은 수학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개인정보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행위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초연결사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이자 도전이 된다. 이 중에서 초연결사회가 유발하는 빅데이터 문제는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좀 더 살펴 보도록 한다.

3. 빅데이터

1) 개념

먼저 빅데이터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본다.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정의하는 방식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의하는 방식이 그것이다.⁵⁾ 양적인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정의하면, 빅데이터란 양적으로 거대하고 생성속도가 빠르며 이질적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뜻한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very large DB”, “extremely large DB”, “extreme data”, “total data” 등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⁶⁾ 빅데이터를 ‘데이터의 양’(Volume), ‘데이터 생성속도’(Velocity), ‘데이터의 다양성’(Variety)을 이용해 정의하는 것도 양적인 방식으로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것에 해당한다.⁷⁾

이와 달리 기술적인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것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의 과학적·기술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빅 데이터란 큰 규모를 활용해 더 작은 규모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통찰이나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추출해내는 일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장, 기업 및 시민과 정부의 관계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다.”⁸⁾

5) 박관훈, “기업의 빅데이터(Big Data)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 『일감법학』 제27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2, 127면 아래; 빅데이터 개념에 관해서는 장병열·김영돈, “빅데이터 기반 융합 서비스 창출 주요 정책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책』 제23권 제3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9, 5-6면; 차상욱, “빅데이터(Big Data) 환경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IT와 법연구』 제8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4.2, 197-198면 등 참고.

6) 최성·우성구, “빅데이터의 정의, 활용 및 동향”, 『정보처리학회지』 제19권 제2호,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3, 11면.

7) 정용찬, 『빅데이터』,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4-5면; 이외에 빅데이터를 양적으로 정의하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다. 즉 빅데이터란 “더 나은 의사결정, 시사점 발견 및 프로세스 최적화를 위해 사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처리가 필요한 대용량, 초고속 및 다양성의 특성을 지닌 정보 자산”을 뜻한다. 또한 빅데이터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도구가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데이터”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2011, p.1.

8) 빅토르 마이어 쾨베르거·케네스 쿠키어, 앞의 책, 19면; 쾨베르거와 쿠키어는 371면 주석 6번에서 종전의 빅데이터 개념정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2001년 가트너와 더그

그러면 빅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적절할까? 사실 빅데이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고려하면, 양적인 측면에서 이를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빅데이터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뜻한다. 이와 달리 기술적인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것은,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빅데이터보다는 빅데이터 과학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빅데이터가 차지하는 의미는, 빅데이터가 단순히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뜻한다는 점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Viktor Mayer-Schönberger)와 케네스 쿠키어(Kenneth Neil Cukier)가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처럼, 빅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통찰이나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필자는 이 글에서 양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빅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빅데이터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속도도 매우 빠르며,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통찰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의 총체”를 뜻한다.⁹⁾

2) 빅데이터의 순기능

빅데이터는 대규모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한 후, 이를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이나 예측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공리를 증진한다. 또한 이는 상품으로 개발되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빅데이터에 관해서는 가장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구글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검색어만으로도 독감이 언제 어디서 유행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쇤베르거와 쿠키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인상 깊게 소개한다.¹⁰⁾

레이니가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빅 데이터의 3Vs, 즉 크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에 대해 설명한다. 당시에는 유용한 설명이었으나 불완전한 설명이다.”

9) 양천수, 「빅데이터와 인권」, 영남대학교출판부, 2016, 29면.

10)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 · 케네스 쿠키어, 앞의 책, 10면.

“공교롭게도 H1N1 바이러스가 신문의 1면을 장식하기 몇 주 전, 거대 인터넷 기업 구글google의 엔지니어들이 주목할 만한 논문 한 편을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했다. 이 논문은 보건 담당 관리들과 컴퓨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되었지만, 그 외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논문의 내용은 구글이 겨울철 미국에서 독감의 확산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전국적 규모로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또는 어느 주에서 유행할지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구글이 사용한 방법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을 살피는 것이었다. 매일 전 세계적으로 구글에 보내는 검색 질문은 30억 개 이상이었으므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충분했다. 또 구글이 수신하는 검색 내용들을 수년간 보관한다는 점 역시 분석에 도움이 됐다.”

이외에도 빅데이터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공리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미국 시애틀에 소재한 워싱턴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의 오렌 에치오니(Oren Etzioni) 교수는 항공운임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앞으로 항공기 운임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이를 상품화하였다.¹¹⁾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아마존(Amazon)이나 타깃(Target)은 빅데이터를 도서나 상품을 판매하는 데 적극 활용하여 매출을 제고하고 있다.¹²⁾ 이처럼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빅데이터는 새로운 통찰과 지식을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요컨대,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3) 빅데이터의 역기능

그러나 초연결사회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역시 순기능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빅데이터는 역기능 역시 내포한다. 우리의 정보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역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빅데이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먼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에는 우리의 개인정보 역시 포함된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허용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관한 모든 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빅데이터가 수행되면, 수

11) 위의 책, 12-17면.

12) 위의 책, 97면 아래.

학적 알고리즘에 바탕을 둔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하여 우리의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위할 것인지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다. 말하자면,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역시 송두리째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개인정보, 특히 마지막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내밀한 프라이버시 영역이 노출된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의 사적영역이 모두 해체되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빅데이터에 의해 우리가 ‘빅 브라더’(big brother)와 같은 감시사회에 살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독일의 범죄학자인 징엘슈타인(Tobias Singelstein)과 슈톨레(Peer Stolle)는 아래와 같이 인상 깊게 그려낸다.

“이러한 통제기술의 입장에서는 현대적 정보처리기술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정보처리기술은 한편으로는 최대한 질서에 순응하여 행동하고 눈에 띄이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행위통제를 위해 투입된다. 다른 한편 정보처리기술은 위협을 통제하고 회피하는 데 기여한다. 이 기술을 통해 사람과 사실에 대해 포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들 데이터는 다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예측결정을 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모든 형태의 삶의 표현과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 처리, 저장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치된 데이터뱅크들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이제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탐지할 수 있는 총체적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¹³⁾

이는 무엇보다도 국가나 사회가 ‘안전’을 위해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안전국가’와 ‘안전사회’를 위해 결국에는 ‘빅데이터 제국’이 도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각 개인의 정보가 남김없이 수집·저장·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정보적 인격권의 위기’라는 새로운 비극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가 되고 말 것이다.

13) 토비아스 징엘슈타인·피어 슈톨레, 윤재왕 (역), 『안전사회: 21세기의 사회통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80면.

Ⅲ. 인격권의 발전과 법적 보호

이처럼 초연결사회는 빅데이터와 맞물려 한편으로는 사회적 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보적 인격권을 침해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초연결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우선 인격권이 어떻게 성장해 오늘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간략하게 조감하고,¹⁴⁾ 이러한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구 선진국,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은 어떤 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격권의 발전

1) 인격권의 부정

일반적으로 인격권이란 “명예, 성명, 초상, 사적 영역 및 정보 등과 같이 인격과 관련을 맺는 모든 이익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¹⁵⁾ 주지하다시피 다른 권리와는 달리, 인격권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19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인격권은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대 민법학의 초석을 놓은 독일의 로마법학자 사비니(F.C.v. Savigny)조차도 인격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승인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서 인격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승인하지 않은 것일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¹⁶⁾ 첫째, 인격권이 전제로 하는 인격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인격권은 ‘인격’(Person)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자칫 인격을 객체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I. Kant)의 철학을 수용한 사비니가 이러한 견지에서 인격권의 독자성을 부정하였다.¹⁷⁾ 셋째, 인격권은 다른 기본적 권리들, 가령 생명권이나 자유권, 명예권

14) 이에 관해서는 양천수,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인격권의 구조·성장·분화”, 『법과정 책 연구』 제11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9, 1139-1165면 참고.

15) 양천수, 『민사법질서와 인권』, 집문당, 2013, 234면; 박도희, “인격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리(I)”, 『한양법학』 제18집, 한양법학회, 2005.12, 187면 등.

16) 이에 관해서는 양천수, 앞의 『빅데이터와 인권』, 98-99면 참고.

17) 임미원, “인격권 개념의 기초적 고찰”, 『우리 민법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한국 민

등으로 구성되므로, 이러한 권리들을 보호함으로써 인격권을 보장할 수 있기에 굳이 인격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승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인문주의 법학자인 도넬루스(H. Donellus)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¹⁸⁾

2) 인격권의 등장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격권은 독자적인 권리로 등장한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대륙법에서는 ‘인격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영미법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된다.¹⁹⁾ 이렇게 생명권, 자유권, 명예권 등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인격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구조가 바뀌고 이로 인해 새로운 침해형태가 등장하게 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말하자면 사진이나 영화와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발명되면서 생명이나 자유가 아닌 인격성 그 자체가 침해되는 현상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인격권은 법적 주체의 생명이나 자유가 아닌 인격성 그 자체를 보장하는 실정법적 권리로 자리매김한다.

3) 인격권의 발전 및 정보화

이러한 인격권은 현대사회가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새롭게 발전하고 분화된다. 새로운 권리들이 인격권의 범주로 등장한다. 이러한 예로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정보적 자기결정권’이나 유럽사법재판소가 최근 인정한 ‘잊혀질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애초에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권리로 출발했던 인격권이 이제는 현대 정보화사회에 발맞추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기 인격의 정보에 대한 적극적·능동적 권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정보적 인격권’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사법학 60년 회고와 전망], 박영사, 2006, 73면 참고.

18) Helmut Coing, *Das subjektive Recht und der Rechtsschutz der Persönlichkeit*, Frankfurt/M., 1959, S. 17.

19)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이 글에서는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양자의 관계에 관해서는 양천수, 앞의 「민사법질서와 인권」, 235면 참고.

2. 인격권에 대한 법적 보호

1) 존엄과 자유

그러면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인격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그런데 인격권에 대한 서구 선진국의 보호법제를 보면, 대륙법계를 대변하는 유럽과 영미법계를 대변하는 미국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한 마디로 ‘존엄 대 자유’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법학자 제임스 휘트먼(James Q. Whitman) 교수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⁰⁾ 휘트먼 교수에 따르면, 인격권에 관해 유럽은 존엄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은 자유를 강조한다. 이를테면 유럽에서는 ‘존엄의 측면을 갖는 프라이버시’(privacy as an aspect of dignity)가 중요한 반면, 미국에서는 ‘자유 측면을 갖는 프라이버시’(privacy as an aspect of liberty)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존경과 인격적 존엄’(respect and personal dignity)이 인격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정부의 개입을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지낼 권리’가 핵심적 내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같은 인격권 혹은 프라이버시를 놓고도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유럽과 미국은 시각을 달리한다.

2) 유럽: 사전동의를 통한 인격권 보장

이러한 휘트먼 교수의 주장은 인격권에 대한 유럽 법제와 미국 법제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차이를 잘 설명한다. 칸트의 철학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존엄의 핵심적 내용은 바로 자율성이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자신에 관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를 인격권에 적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격에 관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존엄한 존재로서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유럽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동의(opt-in)를 강조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법제가 바로 유럽연합의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

20) James Q. Whitman, “The Two Western Cultures of Privacy: Dignity versus Liberty”, *Yale Law Journal* 114, 2004, p.1151; 이를 요약해서 소개하는 차상욱, 앞의 논문, 217-218면 등 참고.

과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다.

1995년 10월 24일 유럽연합이사회가 채택한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일반적 개인정보보호지침이다.²¹⁾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이 글의 논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갖고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사전동의 방식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제7조). 이외에도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별적인’ 지침이 아닌 ‘일반적인’ 지침이라는 점, 개인정보를 상당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식별할 수 있는 자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히 신원증명번호 또는 신체적·생리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 혹은 사회적 동일성에 관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참조하여 식별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a))²²⁾ 이외에도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원형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제12조 (b)).²³⁾

독일이 1977년에 연방법으로 제정한 “연방개인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 BDSG)도 존엄을 강조하는 유럽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²⁴⁾ 왜냐하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83년 12월 15일에 내린 이른바 ‘인구조사판결’을 통해 정립한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원칙으로 ‘정보최소화’(Datensparsamkeit) 원칙과 ‘목적구속성’(Zweckbindung) 원칙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 정보최소화 원칙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21) 정식명칭은 “Directive 95/461 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이다.

22)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data subject”); an identifiable person is one who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indirectly, in particular by reference to an identification number or to one or more factors specific to his physical, physiological, mental, economic, cultural or social identity.”

23) 제12조는 “접근권”이라는 표제어를 갖고 있다.

24)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서는 김성천,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제35집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8, 221-245면; 윤지영·이천현·최민영·윤재왕·전지연,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범의 선진화 방안(I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64-165면(전지연 집필부분) 등 참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제3조의 a). 나아가 목적구속성 원칙은 법률 또는 정보주체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목적을 위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제28조). 이외에도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마찬가지로 잊혀질 권리의 초기형태를 규정한다(제35조).²⁵⁾

3) 미국: 사후승인을 통한 프라이버시 보장

이렇게 인격권에서 존엄, 달리 말해 사전동의 방식의 정보적 인격권을 강조하는 유럽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자유, 즉 프라이버시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만약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설사 특정한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미국에서는 ‘사후승인’(opt-in)이 강조된다.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에서는 자신을 숨기려 하기 보다는 널리 알리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²⁶⁾ 이러한 이유에서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타인의 자유, 즉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약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정보주체보다는 정보처리자의 경제적 이익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다.²⁷⁾ 그 때문에는 유럽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아직 일반적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물론 지난 1974년 12월 31일에 프라이버시법(The Privacy Act of 1974)을 제정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일반적인 정보보호법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일 뿐이다. 당연히 사전동의 방식의 정보적 자기결정권도 아직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최근 오바마 정부가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onsumer

25) 이는 부정확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6) 이를 보여주는 曾我部直裕, 최혜선 (역), “빅데이터 활용에 의한 경제성장·국민의 편의증진과 공법적 과제”, 『유럽헌법연구』 제14호, 유럽헌법학회, 2013.12, 410면; Jeffrey Rosen, “Structuring Intimacy: some reflections on the fact that the law generally does not protect us against gazes”, *Georgetown Law Journal* 89, 2001, p.2080 등 참고.

27)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규제에 관해서는 이상경,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와 현황에 관한 일고”, 『세계헌법연구』 제18권 제2호, 국제헌법학회, 2012.8, 195-214면; 진은정·김학범·염홍열,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제22권 제1호, 정보보호학회, 2012.2, 47-57면 등 참고.

Privacy Bill of Rights: CPBR)을 제시함으로써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

4)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면 이렇게 ‘존엄 대 자유’로 차별화되는 유럽 법제와 미국 법제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가?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이미 지난 2011년 3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그 이전에 존재하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유럽의 법제를 수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도 사전동의 방식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5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 및 이용의 기간”, “정보주체가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향유한다는 사실 및 동의를 거부함으로써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불이익의 내용”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제15조 제2항). 이를 통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더 나아가 정보주체의 정보적 인격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적 인격권을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상당히 넓게 규정한다. 가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한다.²⁸⁾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설사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 개

28)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도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거의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영상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인정보로 인정한다. 판례 역시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²⁹⁾ 이러한 ‘결합가능성’을 통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범위를 상당히 확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정보적 인격권을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한다.

IV.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모색

1. 기존의 인격권 보호체계의 문제점

이처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전동의 방식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기본 축으로 하고 결합가능성을 통해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격권을 강도 높게 보장한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개인정보이용보다는 인격권 보호에 더욱 치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격권 보호체계는 현대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초연결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소통을 통해 축적한 정보를 다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합가능성을 통해 넓게 확장된 개인정보 개념과 사전동의 방식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은 이러한 상호주체적·주체-객체적·상호객체적 소통에 장애가 된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 결합가능성을 통한 개인정보 확장의 문제점

첫째, 결합가능성을 통해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장하면, 현대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정보는 거의 사라진다. 이를테면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해 인터넷 쿠키정보만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이른바 ‘개인의 주변정보’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빅데이터에 힘입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까지 개인정보로 보아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수집·저장·분석·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 그 만큼 초연

29)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참고.

결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다.

2) 사전동의 방식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점

둘째, 사전동의 방식의 정보적 자기결정권도 초연결사회를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된다. 이는 다시 두 가지 이유로 논증할 수 있다. 첫째, 정보적 자기결정권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제대로 가동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 저장 및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보적 자기결정권은 이에 대해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 반대로 정보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과소규제가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요즘 대부분의 개인정보처리자들은 포괄적 동의를 남용함으로써 사실상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사전동의 방식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은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적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초연결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인격권 보호방안이 요청된다.

2. 비교법적 검토

그러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환경에서 유럽연합과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들은 어떻게 정보적 인격권을 보장하는가? 아래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 유럽연합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2012년 1월 25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의회에 제안하고, 지난 2016년 4월 14일 유럽의회를 통과한 ‘일반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한다.³⁰⁾

30) 이에 관해서는 최승재,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승인의 의미와 전망”, KISO저널 제 23호(2016.5.20)(<http://journal.kiso.or.kr/?p=7403>)(방문일자: 2016.8.16. 21:45); ‘일반정보보호규칙’의 정식명칭은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첫째, 일반정보보호규칙은 여전히 명시적인 사전동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제6조 제1항 (a)). 이 점에서 일반정보보호규칙은 여전히 빅데이터보다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둘째, 프로파일링 거부권을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신에 대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동화된 개인정보 수집·처리 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함으로써,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적 특성을 평가하거나 업무능력, 경제적 상태, 개인적 선호, 건강, 위치, 신뢰도, 품행 등을 분석·예측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³¹⁾ 이러한 프로파일링 거부권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인격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최근 관심을 얻고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규정한다(제17조).³²⁾ 넷째,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Privacy by Design)를 규정한다(제23조 제1항). 여기서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즉 인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³³⁾ 다섯째, ‘프라이버시 친화적 초기값 설정’(Privacy by Default)을 규정한다(제23조 제2항). 프라이버시 친화적 초기값 설정이란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값을 설정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³⁴⁾ 이는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섯째, 다이렉트 마케팅(direct marketing) 구분고지 의무를 규정한다(제19조 제2항). 일곱째,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 제도를 채택한다.³⁵⁾ 마지막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사전동의 방식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가 역사, 통계, 과학연구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분석할 때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도 이를 행할 수” 있다(제6조 제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이다.

31) 양천수, 앞의 「빅데이터와 인권」, 135면.

32) 물론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에도 이와 유사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2012년 일반정보보호규칙은 제17조에서 ‘잊혀질 권리’라는 표제 아래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격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3)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는 달리 ‘설계 프라이버시’ 또는 원어 그대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고 번역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방안”,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3, 525면; 후자의 경우에는 차상욱, 앞의 논문, 233면 아래 참고.

34) 양천수, 앞의 「빅데이터와 인권」, 2016, 137면.

35) 위의 내용은 이창범, 앞의 논문, 527-528면 참고.

2항).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을 수 있다(제17조 제3항 (c)). 이러한 예외는 민감정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제9조 제2항 (i)).

2) 미국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해 존엄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에서는 유럽연합처럼 일반적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서는 사후승인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그 점에서 미국의 법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처리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경제적 공리를 더욱 중요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미국에서도 빅데이터 환경에 대응하여 개인의 정보적 인격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오바마 정부가 마련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CPBR)이다.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은 오바마 정부가 2012년 2월 23일에 발표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 있다.³⁶⁾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은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7가지 원칙을 선언한다.³⁷⁾ 첫째는 ‘개인적 통제(Individual Control)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처리에 관해 선택권, 동의철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에 상응한다. 둘째는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정보처리자는 정보처리항목, 처리 이유, 이용방법, 보존·삭제시기, 제3자 제공목적 등을 공개해야 한다. 셋째는 ‘목적 존중(Respect for Context)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정보처리자는 수집목적에 따라서만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넷째는 ‘정보보안(Security) 원칙’이다. 이에 의하면, 정보처리자는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는 ‘정보접근 및 정확성(Access and Accuracy) 원칙’이다. 이에 의하면, 정보처리자는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접근을 보장해야 하고, 수집하는 정보가 정확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는 ‘최소수집(Focused Collection)

36) The White House, Consumer Data Privacy in a Networked World: A Framework for Protecting Privacy and Promoting Innovation in the Global Digital Economy (2012.1). 이 원본은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email-files/privacy_white_paper.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방문일자: 2014.10.19. 17:52).

37) 아래의 내용은 양천수, 앞의 「빅데이터와 인권」, 142-144면 참고.

원칙'이고 일곱째는 '책임준수(Accountability) 원칙'이다.

3) 평가

이렇게 현대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환경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이 정보적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놓은 대응방안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마련한 일반정보보호규칙에서 수용하는 프로파일링 거부권이나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는 종래의 인격권 보호체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보호방안이다. 특히 프로파일링 거부권은 빅데이터 환경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새롭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 오바마 정부가 마련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에서는 '정보보안원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원칙은 유럽연합의 일반정보보호규칙이 규정하는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와 유사한 것으로서 과학적·기술적인 장치를 통해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자 한다. 물론 유럽연합의 일반정보보호규칙이 여전히 사전동의 방식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은 현대 초연결사회에 적절하지 않은 대응방안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더욱 지향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정보보호규칙이나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이 새롭게 제안하는 프로파일링 거부권이나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정보보안원칙 등은 초연결사회에서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를 구상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구상

이처럼 전통적인 방식의 인격권, 특히 사전동의 방식의 정보적 자기결정권만으로는 현대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엄격한 사전동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환경에 제공하는 사회적 공리를 누리는 데 장애가 되는 과잉규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적 인격권을 형해화하는 과소규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편으로는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환경이 제공하는 사회적 공리를 이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주체의 정보적 인격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를 ‘구상’으로서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1) 원칙

우선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를 구상하는 데 바탕이 되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도록 한다.

(1) 초연결사회의 사회적 공리와 정보적 인격권 사이의 실제적 조화

첫째,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는 초연결사회가 안겨주는 사회적 공리와 정보주체의 인격권이 실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³⁸⁾ 이를 위해서는 일단 초연결사회의 사회적 공리를 위해 정보적 인격권을 형해화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보적 인격권을 절대시 하여 초연결사회나 빅데이터 환경이 제공하는 사회적 공리를 무시하는 것도 피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양자가 실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는 이 물음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전동의 방식의 정보적 자기결정권 완화

둘째, 사전동의 방식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³⁹⁾ 이미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사전동의 방식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초연결사회의 사회적 공리를 활용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결합가능성을 통해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장한다. 문제는 빅데이터 과학에 의해 결합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쿠키정보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은 현대 초연결사회에 걸맞게 어느

38) 실제적 조화에 관해서는 정재황, “기본권의 상충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9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8, 15-36면 참고.

39) 이에 관해서는 오길영,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27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2, 166면 아래 참고; 이러한 견해를 대변하는 문헌에 관해서는 오길영, 같은 논문, 163-164면에 소개된 문헌 참고.

정도 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적절할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사전동의 방식을 사후승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둘째는 사전동의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필자는 후자의 방안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채택하고 있는 사전동의 방식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은 우리가 오랫동안 논의한 끝에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도 몇 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기본 골격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후자의 방안, 즉 개인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로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현대 초연결사회의 빅데이터가 실효성 있게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인터넷 쿠키정보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새로운 정보적 인격권의 모색

셋째, 사전동의 방식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완화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적 인격권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빅데이터 과학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적 인격권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유럽연합의 일반정보보호규칙이 채택하고 있는 프로파일링 거부권이나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가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새로운 정보적 인격권 구상

아래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어 현대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새로운 정보적 인격권을 제안해 보도록 한다.

(1)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

먼저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을 언급할 수 있다.⁴⁰⁾ 이는 유럽연합의 일반정보

40) 이에 관해서는 양천수, 앞의 「빅데이터와 인권」, 172면 아래 참고.

보호규칙이 받아들인 프로파일링 거부권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프로파일링 거부권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마이닝을 정면에서 거부하는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이를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으로 개선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자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정보주체를 프로파일링 하는 것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정보주체는 사전동의 방식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프로파일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포괄적 프로파일링’과 ‘개별적 프로파일링’이 그것이다. 여기서 포괄적 프로파일링은 정보주체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주체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개별적 프로파일링은 정보주체의 특정 측면, 이를테면 특정 재화의 쇼핑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필자는 이 중에서 개별적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만 정보주체의 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달리 포괄적 프로파일링은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정확한 데이터 마이닝 요청권

다음으로 정확한 데이터 마이닝 요청권을 제시할 수 있다.⁴¹⁾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을 인정하면, 자기결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별 정보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이 이루어진다. 이 때 데이터 마이닝은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대부분 객관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⁴²⁾ 이에 따르면, 데이터 마이닝 역시 절대적으로 객관적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부여해야 한다. 이를테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왜 자신이 수행한 데이터 마이닝이 정확한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1) 위의 책, 176면 참고.

42) 이에 관해서는 이재현, “빅데이터와 사회과학: 인식론적, 방법론적 문제들”,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9권 제3호, 한국언론학회, 2013년 가을호, 127-165면 참고.

(3) 잊혀질 권리

유럽사법재판소가 부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이슈가 된 잊혀질 권리 역시 정보적 인격권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⁴³⁾ 잊혀질 권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잊혀질 권리’와 ‘주관적 잊혀질 권리’가 그것이다.⁴⁴⁾ 객관적 잊혀질 권리는 일정한 기간이 도과하면 정보가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보만료일’을 도입하는 것이다.⁴⁵⁾ 이 제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 부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관적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주관적 잊혀질 권리는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4)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요청권

앞에서 제안한 정보적 인격권은 기존의 인격권과 비교하면 상당히 새로운 성격을 갖는다. 그렇지만 권리의 실효성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요청권은 성질 면에서 기존의 인격권과는 차이를 보인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요청권이 내용으로 삼는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는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즉 인격권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버 등과 같은 정보처리장치를 기술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기존 권리의 경우에는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여지가 상존하지만,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는 의무자가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인격권을 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요청권은 ICT법에서 즐겨 사용되는 새로운 규제방식, 이른바 ‘아키텍처 규제’(architectural regulation)와 관련을 맺는다.⁴⁶⁾ 이를 달리 ‘물리적·기술적 규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⁴⁷⁾ 이러한

43) 이를 소개하는 국내문헌으로는 윤중수, “[칼럼]잊혀질 권리”, 『네이버레터』(2014.5.29); 법무법인 세종,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최근 유럽 최고법원의 판결과 그 파급”, 『Legal Update』 2014.6.20. 등 참고.

44) 이에 관해서는 양천수, 앞의 『빅데이터와 인권』, 177-178면 참고.

45) 이를 주장하는 빅토르 마이어 쇠베르거, 구본권 (옮김), 『잊혀질 권리』, 지식의 날개, 2013, 246면 아래 참고.

46) 이에 관해서는 이에 관해서는 심우민, “사업장 전자감시 규제입법의 성격”, 『인권법평론』 제1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2, 157면 아래; 심우민, “정보통신법제의 최근 입법동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요청권은 현대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인격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⁴⁸⁾

V.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환경을 분석하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의 원칙과 권리를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권리의 예로서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 정확한 데이터 마이닝 요청권, 잊혀질 권리,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요청권을 제안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제안한 것은 일종의 구상 또는 시론에 불과하다. 필자가 잘 정돈된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를 제시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는 앞으로 필자가 계속 다루어야 할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투고일 : 2016.10.17. / 심사완료일 : 2016.12.10. / 게재확정일 : 2016.12.20.

향: 정부의 규제 개선방안과 제19대 국회 전반기 법률안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3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4.6, 88면 아래 등 참고.

47) 양천수, 앞의 「빅데이터와 인권」, 182면 아래 참고.

48) 이러한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요청권의 원칙으로는 다음 일곱 가지 원칙이 강조된다. “사후적인 구제가 아닌 사전적 예방 원칙”, “프라이버시 초기값 설정 원칙”,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설계 원칙”, “완전한 기능성 원칙”, “처음부터 끝까지 보안 원칙”, “공개성 및 투명성 원칙”이 그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Ann Cavoukian, “Privacy by Design: 7 Foundational Principles.” 이 자료는 <http://www.privacybydesign.ca/content/uploads/2009/08/7foundationalprinciples.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소개하는 국내문헌으로는 차상욱, 앞의 논문, 233-234면 참고.

[참고문헌]

- 곽관훈, “기업의 빅데이터(Big Data)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 『일감법학』 제27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2.
- 금융찬, “디지털문명기 초연결사회, 창조경제논의”, 『컴퓨터월드』 제363호, 파워미디어, 2014.1.
- 김성천,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제35집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8.
- 박도희, “인격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리(I)”, 『한양법학』 제18집, 한양법학회, 2005.12.
- 법무법인 세종,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최근 유럽 최고법원의 판결과 그 파급”, 『Legal Update』 2014.6.20.
- 선원진·김두현, “초연결사회로의 변화와 개인정보 보호”, 『정보와 통신』 제31권 제4호, 한국통신학회, 2014.4.
- 심우민, “사업장 전자감시 규제입법의 성격”, 『인권법평론』 제1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2.
- _____, “정보통신법제의 최근 입법동향: 정부의 규제 개선방안과 제19대 국회 전반 기 법률안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3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4.6.
- 양천수,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인격권의 구조·성장·분화”, 『법과정책연구』 제11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9.
- _____, 『민사법질서와 인권』, 집문당, 2013.
- _____, “현대 안전사회와 법적 통제: 형사법을 예로 하여”, 『안암법학』 제49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1.
- _____, 『빅데이터와 인권』, 영남대학교출판부, 2016.
- 오길영,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27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2.
- 윤종수, “[칼럼] 잊혀질 권리”, 『네이버레터』(2014.5.29).
- 윤지영·이천현·최민영·윤재왕·전지연,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이상경,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와 현황에 관한 일고”, 『세계헌법연구』 제18권 제2호, 국제헌법학회, 2012.8.
- 이재현, “빅데이터와 사회과학: 인식론적, 방법론적 문제들”,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9권 제3호, 한국언론학회, 2013년 가을호.

-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방안”,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3.
- 임미원, “인격권 개념의 기초적 고찰”, 『우리 민법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한국 민사법학 60년 회고와 전망』, 박영사, 2006.
- 유영성 외, 『초연결 사회의 도래와 우리의 미래』, 한울, 2014.
- 장병열·김영돈, “빅데이터 기반 융합 서비스 창출 주요 정책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책』 제23권 제3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9.
- 전은정·김학범·염홍열,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제22권 제1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12.2.
- 정재황, “기본권의 상충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9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8.
- 차상욱, “빅데이터(Big Data) 환경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IT와 법연구』 제8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4.2.
- 최 성·우성구, “빅데이터의 정의, 활용 및 동향”, 『정보처리학회지』 제19권 제2호,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3.
- 최승재,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승인의 의미와 전망”, KISO저널 제23호 (2016.5.20)(<http://journal.kiso.or.kr/?p=7403>).
- 빅토르 마이어 쾨베르거, 구분권 (웁김), 『잊혀질 권리』, 지식의 날개, 2013.
- 빅토르 마이어 쾨베르거·케네스 쿠키어, 이지연 (웁김),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21세기북스, 2013.
- 토비아스 징엘슈타인·피어 슈톨레, 윤재왕 (역), 『안전사회: 21세기의 사회통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曾我部直裕, 최혜선 (역), “빅데이터 활용에 의한 경제성장·국민의 편의증진과 공법적 과제”, 『유럽헌법연구』 제14호, 유럽헌법학회, 2013.12.

U. Beck, Risikogesellschaft, Frankfurt/M. 1986.

Ann Cavoukian, “Privacy by Design: 7 Foundational Principles”

(<http://www.privacybydesign.ca/content/uploads/2009/08/7foundationalprinciples.pdf>).

Helmut Coing, Das subjektive Recht und der Rechtsschutz der Persönlichkeit, Frankfurt/M., 1959.

McKinsey Global Institute,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2011).

Jeffrey Rosen, “Structuring Intimacy: some reflections on the fact that the law generally does not protect us against gazes”, *Georgetown Law Journal* 89(2001).

The White House, *Consumer Data Privacy in a Networked World: A Framework for Protecting Privacy and Promoting Innovation in the Global Digital Economy*(2012.1).

James Q. Whitman, “The Two Western Cultures of Privacy: Dignity versus Liberty”, *Yale Law Journal* 114(2004).

[국문초록]

현대 초연결사회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양 천 수*

이 글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초연결사회를 분석하고 이러한 초연결사회가 현행 법체계, 그 중에서도 인격권 보호체계에 어떤 도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초연결사회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초연결사회에서 등장하는 빅데이터 문제를 다룬다.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이러한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 공리를 제공하는지, 반대로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야기하는지를 검토한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초연결사회에서 인격권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특히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가 어떻게 인격권을 형해화할 수 있는지를 논증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초연결사회 및 빅데이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격권체계를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지 모색한다. 그러나 인격권을 강화하려고만 하는 법정책은 현대 초연결사회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공리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초연결사회의 사회적 공리를 활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격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는, 다시 말해 두 가지 이익이 실제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이 개인정보에 대한 인격권, 즉 정보적 인격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빅데이터에 대응하여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비교법적 차원에서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원칙과 네 가지 권리를 제안한다. 이 글은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 정확한 데이터 마이닝 요청권, 잊혀질 권리,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요청권을 새로운 정보적 인격권으로 제시한다.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법학박사

주제어 : 초연결사회, 빅데이터, 인격권, 정보적 인격권, 정보적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Abstract]

The Hyper-Connected Society and a New Protection System of Personality Rights

Yang, Chun-Soo*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hyper-connected society which is emerging as a new phenomenon in the modern society and verify how the hyper-connected society can challenge the current law system, especially the protection system of personality rights, and how we can respond to this. First of all, this article will address the nature,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of the hyper-connected society as a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and then address the issues with the big data emerging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specially what the big data is, what social benefits this big data provides or, on the contrary, what risks this big data causes. Thereafter, this article will handle the challenges faced by the personality rights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especially how the hyper-connected society and big data frame the personality rights. Furthermore, this article will seek a new personality rights system. However, the legal policy focusing on the enhancement of personality rights is not desirable considering the social benefits brought by the hyper-connected societ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seek the ways of utilizing the social benefits of the hyper-connected society without deconstructing the personality rights, in other words, the ways of harmonizing these two benefit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methods adopted by EU and the USA to protect the personality rights for personal information, i.e., “informational personality rights”, and the ways they seek to respond to the big data in the dimension of comparative law. Based upon these discussions, this article will suggest 3 principles and 4

* Associate Professor at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 Dr. jur.

rights needed to prepare a new personality rights system. This article suggests self-profiling autonomy, right to request accurate data mining, right to be forgotten and privacy by design as new informational personality rights.

Key words : Hyper-connected society, Big data, Personality rights, Informational Personality rights, Informational autonomy, Privacy by design

